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방안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II.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

1. 경찰의 보험범죄 단속 추이
2. 보험범죄 수사 프로세스

III. 보험범죄 수사 업무량 및 착안점 분석

1. 조사 설계 및 설문
2. 분석 결과

IV. 보험범죄 수사역량 제고방안

1. 인력 증원: 지능팀 보험범죄 수사 인력의 증원
2. 기관 협력: 정보 및 증거분석 협력 체계의 구축
3. 수사 기법: 보험유형별 대응과 수사 기법의 개발
4. 시설 확충: 관계자조사 및 증거분석을 위한 시설인프라의 개선
5. 법제 개선: 적용법조의 명확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V.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지능범죄 중에서도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¹⁾로 인해 개별 보험사 손실뿐만 아니라 보험료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서, 이 같은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근절은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어젠다인 ‘비정화의 정상화’ 10대 분야 중 핵심과제로도 설정되어 있다.

한편 최근 보험사기 적발 규모 증가²⁾와 보험범죄의 조직화·전문화 추세를 볼 때 보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지능팀의 업무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 실태를 돌아보고,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한 경찰 지능팀의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보험범죄 수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보험범죄를 담당하는 지능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개선점

1)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약 3조 4천억원(2010년도 민영보험 기준, 서울대·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보도자료)”, 2012. 7. 12. 정웅의 연구에서는 최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를 약 3.5조(2010년)에서 4.5조(2012년)로 추산하고 있다. 정웅, 한국 금융범죄의 유형분석과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2, p. 38; 정웅, “한국 금융범죄의 유형과 범정부적 대응과제”, 대한정치학회보, 제22권 제2호, 2014, p. 13.

2)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747억원(2010년) → 4,237억원(2011년) → 4,533억원(2012년) → 5,190억원(2013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근절 대책(보도자료)”, 2014. 7. 24.

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경찰 조직의 각 기능 중에서도, 지능수사 기능 및 이 기능에서 담당하는 보험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경찰관서의 지능범죄수사부서(지능팀)와 여기서 처리한 사기범죄형 보험사건 위주로 한정되며, 기본적으로 형사기능에서 다루어진 강력범죄형 보험사건은 제외된다.

본 연구가 다루는 경찰 보험범죄 대응실태에 대한 접근은 특히 범죄수사 프로세스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즉 보험범죄 수사 업무에 대한 직무 분석과 업무량 추정, 수사 착안점 도출은 수사관의 수사 업무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순서는 제2장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로서 최근 보험범죄 단속 추이와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 프로세스를 개관해 보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보험범죄 수사의 업무량 및 수사과정에서의 착안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뒤, 제4장에서 적정 업무량 추정에 기초한 인력 증원, 증거분석 지원체계의 구축, 조사시설 인프라 확충 등 수사역량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 연구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Ⅱ.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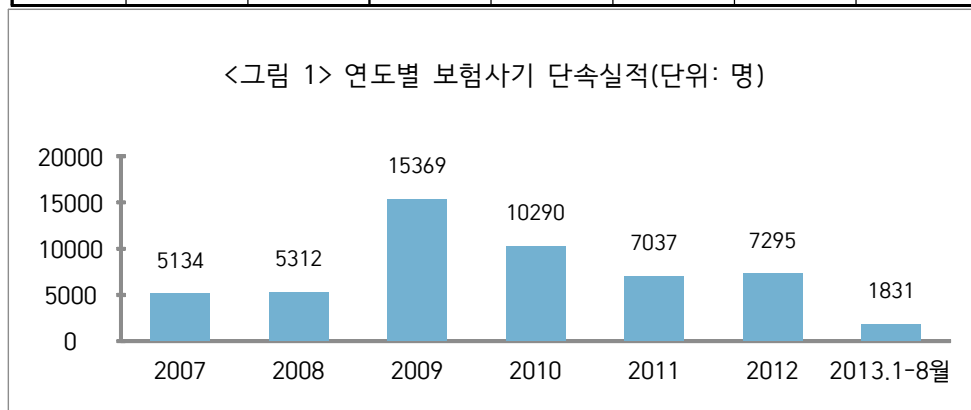
1. 경찰의 보험범죄 단속 추이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를 2007년 이후 보험사기 단속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7~2008년간 약 5천명 수준의 검거실적을 보이다가, 2009~2010년 들어서 1만~1만 5천명으로 급증한 뒤, 최근 2011~2012년간에는 그 검거 인원이 다시 감소하여 약 7천 명 수준에서 머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연도별 보험사기 단속실적(단위: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8월
명	5,134	5,312	15,369	10,290	7,037	7,295	1,831

<그림 1> 연도별 보험사기 단속실적(단위: 명)



자료: 경찰청, “보험사기 단속실적”, 2014.

보험사기 검거인원이 2009년도에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 이처럼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경찰의 자체적인 검거 노력 외에도 경찰청·금융감독원 간 업무협약 체결(2009. 5. 4)을 통해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이 적극 추진되었다는 데에서 찾아질 수 있고, 실제로도 경찰청은 2009년 3.23~5.31일까지 70일간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으로만 533건, 229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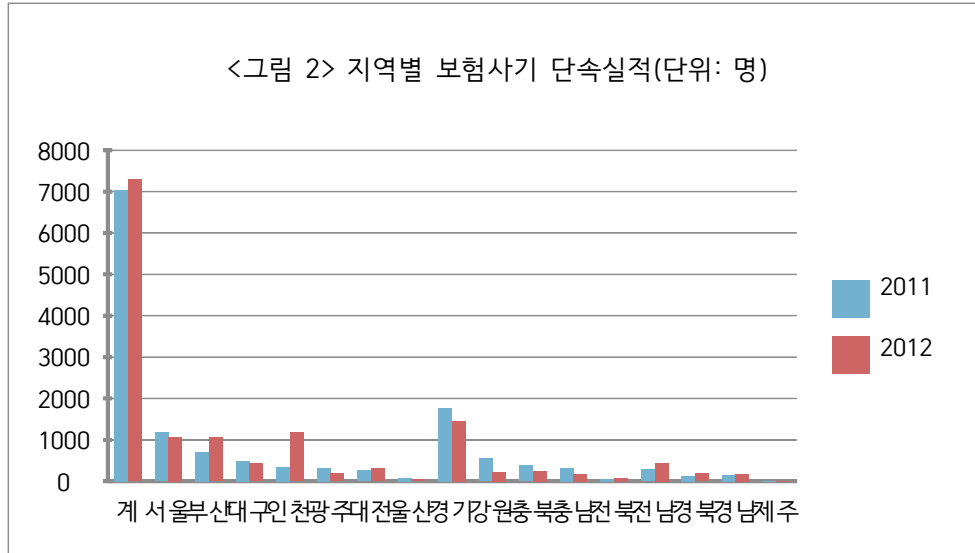
이 당시 집중 단속이 관계기관 간 공조가 특히 두드러졌다는 점은 전체 검거 인원 중 보험사 조사팀에서 제공한 범죄정보로 보험사기범 880명(38.5%)을 검거하고, 그 밖에도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협조로 35명을 검거한 성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³⁾

한편 최근 검거 인원이 약 7천 명 수준에 있는 2011~2012년간의 보험사기 사범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약 20%(1450명, 2012년)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천이 16%(1187명), 서울(1064명)과 부산(1063명)이 각각 15%의 순으로 나타나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들이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지역별 보험사기 단속실적(단위: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	7,037	1,176	709	494	351	318	257	76	1,770	553	381	318	52	290	124	156	12
2012	7,295	1,064	1,063	424	1,187	196	308	40	1,450	224	252	181	82	445	189	17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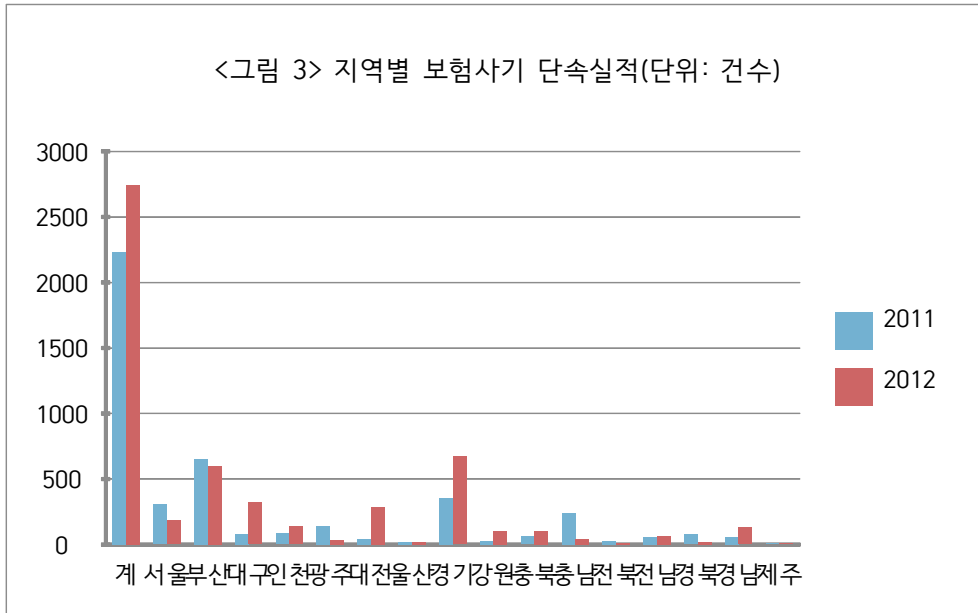
3) 경찰청,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 2,292명 검거(보도자료)”, 2009. 6. 2.



검거건수를 기준으로 보험사기 단속실적을 보면 2011~2012년에 각각 2231건, 2742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5%(672명, 2012년 기준)를 점하고, 그 외에 서울(183명) 및 부산(602명), 대구(302명), 인천(138명), 대전(288명) 등 광역 대도시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지역별 보험사기 단속실적(단위: 건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	2231	305	654	79	84	143	40	19	354	26	61	238	31	55	77	56	9
2012	2742	183	602	321	138	33	288	21	672	104	101	43	13	67	18	130	8



자료: 경찰청, “보험사기 단속실적”, 2014.

경찰은 2014년 들어서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2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2014년 상반기 단속 결과 총 439건, 2037명(구속 36명)을 검거하였으며 편취금액은 61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⁴⁾

4) 주요 검거사례로는 > 고액의 임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 가입 후, 허위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10년간 26개 보험사로부터 총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폭 포함된 일가족 보험사기단 서○○(62세, 남) 등 11명 검거(구속 2명) 사건, (2014. 4. 7, 부산 강서서); > 정상 소를 기립불능 상태로 위장한 뒤,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측·낙협 직원이 보험청구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75억원을 편취한 김○○(41세, 남) 등 258명 검거(구속 8명) 사건, (2014. 3. 13, 충남청 광수대) 등이 있다. 경찰청, “보험사기 2개월 특별단속 실시(보도자료)”, 2014. 7.

<표 4> 201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현황(2014. 2. 24 ~ 4. 23)

구 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편취금액 (억원)
		소계	구속	불구속	
합계	439	2,037	36	2,001	615

자료: 경찰청, “보험사기 2개월 특별단속 실시(보도자료)”, 2014. 7.

경찰은 ‘2014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8. 1~9. 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고의사고, 허위입원 및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보험사기 브로커⁵⁾ 등과 결합한 전문적인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으로 △ 사무장 요양병원 △ 보험관계자 등과 병원과의 결탁을 통한 보험사기 브로커 행위 △ 가·피해자 공모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 경미 범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 요양보험·산재보험 허위서류에 의한 보험금 편취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하였다.⁶⁾

아울러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집중적 수사를 추진할 계획인바,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상반기 편성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요원)을 확대 편성하여⁷⁾ 집중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고 있다.

5) 전·현직 보험모집인 등이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위해 특정병원과 연결하여 주고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하는 자.

6) 2014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70여건에 대해 내사 진행.

7) 2014년 상반기 특별단속 시, 16개 지방청(77명), 1급지 경찰서 등 131개 경찰서(418명)에 전담팀 495명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04명으로 증원 예정.

2. 보험범죄 수사 프로세스

보험범죄의 수사 진행 또는 수사 프로세스는 범죄의 종류와 수법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부적인 단계까지 일률적으로 정리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험범죄의 수사 프로세스 역시 일반적인 수사의 진행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그것은 크게 불 때 내사, 수사의 개시(초동수사), 수사의 실행, 사건 송치 등의 과정을 밝게 된다.⁸⁾

보험범죄의 수사 프로세스를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업무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초기수사, 본 수사, 수사 마무리의 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수사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기수사 단계는 내사와 초동수사(수사개시) 업무가 포함되고, 본 수사 단계에는 관계자조사, 증거분석, 추적수사, 수사지휘 등의 업무가 이루어진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는 사건 송치를 위한 각종 수사서류 작성 등 서류정리 작업이 포함된다.

보험범죄 수사의 경우에는 강력범죄의 경우와 달리 초기수사 단계에서 첩보수집과 수사단서의 분석 등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내사 업무와, 본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분석 등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해당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8) 수사의 진행절차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운 외,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12, p. 89.

Ⅲ. 보험범죄 수사 업무량 및 착안점 분석

1. 조사 설계 및 설문

본 연구의 보험범죄 수사 업무량 및 착안점에 대한 분석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표 5>).

우선 수사 업무 범주는 크게 ① 초기수사 업무, ② 본 수사 업무, ③ 수사 마무리 업무 등 수사 프로세스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초기수사 업무는 내사 업무와 초동수사 업무를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내사 단계에서의 업무는 탐문, 첩보수집 활동 및 수사단서의 사실관계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초동수사 업무는 기초 증거 및 수사자료 확보, (병·의원) 증거자료 압수 수색, (자동차) 사고 현장 확보 및 증거채취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② 본 수사 업무는 관계자조사, 증거분석, 추적수사, 수사지휘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관계자조사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업무, 증거분석은 증거물에 대한 자체 분석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분석 의뢰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밖에 추적수사는 영장집행, 목격자·참고인 탐문 등의 업무, 수사지휘는 팀장의 서류검토, 수사방향 제시, 외근 시 동행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③ 수사 마무리 업무는 수사보고서, 각종 조서,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작성·정리업무를 말한다.

보험범죄 수사 업무량 분석에서는 이러한 기본 프로세스에서의 업무

외에 수사 중 불가피한 직무교육, 개인연가 등을 측정하여 그에 따른 수사 업무의 정상적 손실 규모를 감안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5> 보험범죄 전담수사팀의 수사 업무량 및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 설계

[1] 업무량

수사 프로세스	세부 업무 범주	업무내용	조사 목적
초기 수사	내사	- 탐문, 첩보수집 활동 - 수사단서의 사실관계 분석	업무량 (시간) 추정
	초동 수사 (수사 개시)	기초 증거 및 수사자료 확보 - (보험금) 보험금 청구·지급서류 확보, 보험금 이해관계자 정황 조사. - (병·의원) 증거자료 압수 수색 - (자동차) 사고 현장 확보 및 증거채취 등	"
본 수사	관계자 조사	피의자 보험범죄 특성(전문성·복잡성) 상 - 직접 범행 혐의자 외, - 단순 가담 및 공범 등 넓은 피의자 조사 - 관련 사업체(병·의원 등) 관계자 조사	"
		피해자 보험사 외, - (교통)사고 피해자 개인, 단체 등 조사	"
		참고인 보험범죄 특성상 - 직접 증거물 부족의 보완을 위한 심층조사	"
	증거 분석	- 입수 증거(서류) 자체 분석 - 외부 전문가(기관) 심사·분석 의뢰	"
	추적 수사	- 영장집행 - 목격자·참고인 탐문 및 추적수사	"
	수사 지휘	- 팀장의 서류검토, 수사방향 제시 - 외근 시 동행	"
수사 마무리	서류 정리	수사보고서, 각종 조서,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작성·정리	"
업무 손실	교육 연가	불가피한 직무교육, 개인연가 등에 따른 수사업무의 (정상적) 손실 규모	근무 시간 재산정
계			총 (분)

[2] 수사 착안 및 개선점

수사 프로세스	분석 요소	착안점	조사 목적
초기수사	기관 협력	내사단계에서의 범죄정보 filtering(정보협력)	개선점 도출
		초동수사이후의 유관기관 협력(수사지원)	
본 수사	수사 기법	사건수사에서의 유형별 대응(기법개발)	"
	분석 역량	증거분석에서의 역량 제고(전문성 확보)	
	조사 인프라	사건조사에서의 물적 인프라 확충(시설개선)	
수사 마무리	법제도	擬律단계에서의 적용법조 명확성(법규정비)	"

수사 착안점 및 개선점 설계 역시 ① 초기수사 업무, ② 본 조사업무, ③ 수사 마무리 업무 등 수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되, 개선점 도출을 위한 분석요소로서 기관협력, 수사기법, 분석역량, 조사인프라, 법제도 등을 설정하였다(<표 5>).

구체적인 수사 착안점으로서 초기수사의 경우 내사단계에서 범죄정보 filtering(정보협력), 초동수사 이후의 유관기관 수사지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본 수사에서는 사건수사에서의 유형별 대응(기법개발), 증거분석에서의 역량 제고(전문성 확보), 사건조사에서의 물적 인프라 확충(시설개선)을 설문하였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의율(擬律) 과정에서의 적용법조에 대한 명확성(법규정비) 등 법제 개선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계된 조사의 설문은 2014년 초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편성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요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보험범죄 수사는 현

행법상 “罪名(죄명)이 없는” 보험범죄의 특성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수사관 외에도 다른 강력 기능 또는 부서에 배치된 수사관들도 그 수사 경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보험사기를 담당하는 지능팀의 수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사 대상을 상기 전담수사팀(495명)으로 확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보험사기 전담수사관 자신이 담당한 사건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송치한 사건 1건에 대해서만 응답케 하여 사건 처리 실태에 대한 시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억편견(memory bias)의 위험을 낮추도록 하였다.

2. 분석 결과

본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초에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계 및 전국 16개 지방청 지능수사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약 2주간(2014. 10. 10 ~ 10. 24)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495명에 송부된 설문지 중 304부가 회수되어 61.4%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는 최근 보험범죄 수사 사례가 없는 비도시지역 관서(사건 미발생), 지능팀 수사관 인사이동(인사교류), 최근 주요 사건이나 아직 송치되지 못한 경우(사건 미종결) 등의 사유로 인해 보험사건의 처리 내역을 확정하여 기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사건 등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수사여건에서 최근 사건들과 이질성의 위험이 있거나, 특히 사건 사례로서 세부업무 내역 상 시간과다와 같은 이상점(異常點)이 현출된 경우(예컨대 증거분석 소요시간상 outlier) 등 업무량 측정에 사용되기에 어려운 사건들이 포함

된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 설문에 대한 현장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응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건 자체에 대해 응답이 곤란하거나 사건 이질성이 우려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8건을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

(1) 응답 경찰관에 대한 기술통계

업무프로세스에 기초한 보험범죄 전담수사팀의 직무분석 및 그 직무에 따른 업무량, 수사착안점 등을 파악하기에 앞서 설문에 응한 전국 16개 지방청 소속의 보험범죄 전담수사관(유효응답자, 268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청, 소속관서 유형(지방청 수사대 또는 경찰서 지능팀), 연령, 계급, 경찰관으로서의 총 재직년수, 지능팀 근무경력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응답 수사관들의 소속 지방청을 보면 서울, 부산 및 5대광역시 지역이 전체의 1/3 가량인 34.0%를 차지했다. 소속된 관서의 유형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일선 경찰서 지능팀 소속⁹⁾으로 전체의 92.5%(248명)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지방청 금융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수사2계 등 지방청 수사대 소속으로 7.5%(20명)이었다.

수사관들의 계급은 순경 2명, 경장 28명(10.4%), 경사가 가장 많은 124명(46.3%), 그 다음으로 경위 102명(38.1%)이며, 경감도 12명(4.5%)이 포함되었다.

9) 전담수사관은 경찰서 내에서 대부분 지능팀 소속이나 일부는 경제팀 소속인 경우도 있음.

경찰관들의 연령대는 20대 3명, 30대 81명, 40대 158명, 50대 18명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59.0%)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관 재직년수를 보면 3년 미만인 1명, 3년 이상~5년 미만인 7명에 불과하고, 5년 이상~10년 미만 60명(22.45%), 10년 이상~15년 미만 61명(22.5%)을 차지했으며, 주목할 것은 15년 이상 재직자가 가장 많은 139명으로서 과반이 넘는 51.9%에 달하였다.

<표 6> 응답 경찰관의 기술통계(2014년 10월 현재)

변수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체 N=268명	100	100
소속 지방청	서울	19	7.1	7.1
	부산	18	6.7	13.8
	대구	11	4.1	17.9
	인천	17	6.3	24.3
	광주	15	5.6	29.9
	대전	9	3.4	33.2
	울산	2	.7	34.0
	경기	27	10.1	44.0
	강원	18	6.7	50.7
	충북	16	6.0	56.7
	충남	29	10.8	67.5
	전북	28	10.4	78.0
	전남	12	4.5	82.5
	경북	20	7.5	89.9
	경남	22	8.2	98.1
제주	5	1.9	100.0	
소속 관서	경찰서	248	92.5	92.5
	지방청	20	7.5	100.0
계급	순경	2	.7	.7
	경장	28	10.4	11.2
	경사	124	46.3	57.5
	경위	102	38.1	95.5
	경감	12	4.5	100.0
연령	20대	3	1.1	1.1
	30대	80	29.9	31.0
	40대	158	59.0	89.9
	50대	27	10.1	100.0

경찰재직 년수	3년미만	1	.4	.4
	3년-5년미만	7	2.6	3.0
	5년-10년미만	60	22.4	25.4
	10년-15년미만	61	22.8	48.1
	15년이상	139	51.9	100.0
지능부서 경력	1년미만	54	20.1	20.1
	1년-3년미만	78	29.1	49.3
	3년-5년미만	54	20.1	69.4
	5년-10년미만	56	20.9	90.3
	10년이상	26	9.7	100.0

지능팀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54명(20.1%), 1년 이상~3년 미만이 78명(29.1%), 3년 이상~5년 미만이 54명(20.1%), 5년 이상~10년 미만이 56명(20.9%), 10년 이상이 26명(9.7%)으로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직 년수에 비하면 전 경력기간에 고르게 분포함으로써 지능부서 3년 미만 초임 경력자들도 과반 가까운 49.3%를 차지하였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 警察像(보험범죄 전담수사요원)은 2014년 10월 현재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며, 경찰 입직 후 15년 이상 되었지만, 지능팀에 근무한지는 3년 미만 된 40대의 경사이다.

(2) 보험범죄 사건에 대한 기술통계

응답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268건)들을 보면 유효 응답 265건(결측 3건 제외) 중 2014년이 가장 많은 187건(70.6%)이었고, 2013년이 그 다음으로 50건(18.7%), 2012년이 12건(4.5%) 등으로서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의 대부분이 최근 3년 이내에 송치하여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었다 (93.6%). 그 밖에도 2011년 9건, 2010년 2건 등이 있었고, 일부 사례의 경우 1999년에 처리되었던 주요 사건도 조사되었지만 2010년 이전 조사사건 수는 1~2건에 불과하였다.

<표 7> 처리사건에 대한 기술통계(송치년도)

	빈도(건)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006	1	.4	.4	.4
2007	1	.4	.4	.8
2008	2	.7	.8	1.5
2009	1	.4	.4	1.9
2010	2	.7	.8	2.6
2011	9	3.4	3.4	6.0
2012	12	4.5	4.5	10.6
2013	50	18.7	18.9	29.4
2014	187	69.8	70.6	100.0
합계	265	98.9	100.0	
결측	3	1.1		
합계(건)	268	100.0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268건)들의 수사 단서를 보면 보험회사, 보험협회, 금감원, 병·의원, 정비업소 등으로부터의 첩보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167건(62.3%)이고, 다음으로 진정·투서가 56건(20.9%), 고소·고발이 29건(10.8%), 신고가 9건(3.4%)의 순이었다.

기타 7건(2.6%)은 발생인지 및 수사 중 인지로서 탐문, 정보 등에 의한 첩보와 같이 인지사건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보험범죄 사건은 수사단서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그 2/3가 수사관의 인지에서 출발하는 인지사건이 주종을 이룬다(64.9%).

사건 수사에 투입된 수사관수를 보면 1인에 단독 배당된 경우가 가장 많은 125건(46.6%)이었으나, 2명이 처리한 경우도 85건(31.7%)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2명이상 최대 12명까지 투입되어 복수의 수사

관들이 처리한 사건은 전체의 과반이 넘는 53.4%로 나타나 보험범죄 수사가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처리에 소요된 수사기간도 1개월 이내에 종결한 것이 9건(3.4%), 2개월 이내 종결한 경우 37건(13.8%), 3개월 이내가 63건(23.5%)에 불과한 반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처리사건이 77건(28.7%), 6개월 초과 처리사건이 가장 많은 82건(30.6%) 등으로 나타나 보험범죄 사건의 수사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8> 처리사건에 대한 기술통계(수사단서, 수사관수, 수사기간)

	빈도(건)	퍼센트	누적퍼센트	
단서	첩보	167	62.3	62.3
	신고	9	3.4	65.7
	진정투서	56	20.9	86.6
	고소고발	29	10.8	97.4
	기타	7	2.6	100.0
	합계	268	100.0	
수사관수	1명	125	46.6	46.6
	2명	85	31.7	78.4
	3명	14	5.2	83.6
	4명	20	7.5	91.0
	5명	17	6.3	97.4
	7명	1	.4	97.8
	10명	5	1.9	99.6
	12명	1	.4	100.0
	합계	268	100.0	
수사기간	1개월이내	9	3.4	3.4
	1개월초과~2개월이내	37	13.8	17.2
	2개월초과~3개월이내	63	23.5	40.7
	3개월초과~6개월이내	77	28.7	69.4
	6개월초과	82	30.6	100.0
합계	268	100.0		

수사관들이 처리한 보험범죄 사건을 대분류 기준 즉 보험종류별(생명, 손해, 사회보험, 다중보험)으로 보면, 손해보험이 가장 많은 133건(49.6%)이었고, 세부적인 보험 종목 중에서는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이 74건(27.6%)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도 생명보험 사건이 23.1%(62건)을 차지하고, 그 수는 적으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사건(2.9%) 등도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복수의 “보험 종목”에 가입되어 다중적 보험사기에 연루된 다중보험사건이 65건(24.3%)으로서 손해보험사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범죄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지능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불법행위로서 경찰의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처리사건에 대한 기술통계(보험종류 및 죄종)

보험 종목		빈도	퍼센트
보험 종류 (건)	생명보험(일반)	19	7.1
	생명보험(상해의료)	43	16.0
	① 생보종목 사건 합계	62	23.1
	손해보험(일반)	26	9.7
	손해보험(자동차)	74	27.6
	손해보험(화재)	1	.4
	손해보험(상해의료 長期손보)	29	10.8
	손해보험(기타)	3	1.1
	② 손보종목 사건 합계	133	49.6
	사회보험(일반)	2	.7
	사회보험(건강)	2	.7
	사회보험(산재)	1	.4
	사회보험(고용보험)	3	1.1
	③ 사회보험종목 사건 합계	8	2.9
(위 보험종목 중 2종목 이상 보험상품에 가입한)			
④ 다중보험사건 합계	65	24.3	
전체 합계(=①+②+③+④)	268	100.0	
죄종	사기	245	90.7
	특경법	8	3.0
	의료법위반	2	.7
	기타	3	1.1
	경합범	12	4.4
합계	268	100.0	

주: 1) 보험종목 중 생명보험(일반), 손해보험(일반), 사회보험(일반)은 해당 수사사건의 보험종목을 특정하여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분류된 것으로서 별도의 종목 명칭이 아님.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보험범죄에 대한 별도의 법체계 또는 죄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능팀의 보험범죄와 관련된 죄종을 보면, <표 9>에서 보듯이 형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한 보험사기죄가 가장 많은 죄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0.7%), 그밖에 고액의 사기, 횡령, 배임을 적용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3.0%), 의료법 위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관련 법 위반 등이 있으며, 또한 형법상 사기죄 등과 더불어 여타 죄종이 경합하는 경합범 유형도 있다.

2) 보험범죄 수사의 업무량 분석

보험범죄 사건 1건당 수사 업무량(건당 평균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개관해 보면, 아래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첩보수집에 25.96시간, 첩보분석 32.83시간, 초동수사 75.49시간, 피의자조사 54.83시간, 참고인조사 16.99시간, 피해자조사 12.51시간, 증거분석 110.86시간, 추적수사 60.97시간, 수사지휘 10.16시간 서류정리 64.12시간 등 1건당 평균 454.1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⁰⁾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증거분석으로 약 11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 초동수사가 약 76시간이었다. 이는 보험범죄가 전형적인 지능범죄로서 초동수사에서 범죄사실과 유죄증거의 확보, 아울러 본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분석을 위한 과정이 매우 핵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0)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 다수 관계자를 조사해야 하는 본 수사 단계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본인 외 타 수사관들이 수행한 조사 시간 전체를 구하여, 조사업무(시간) 누락 위험을 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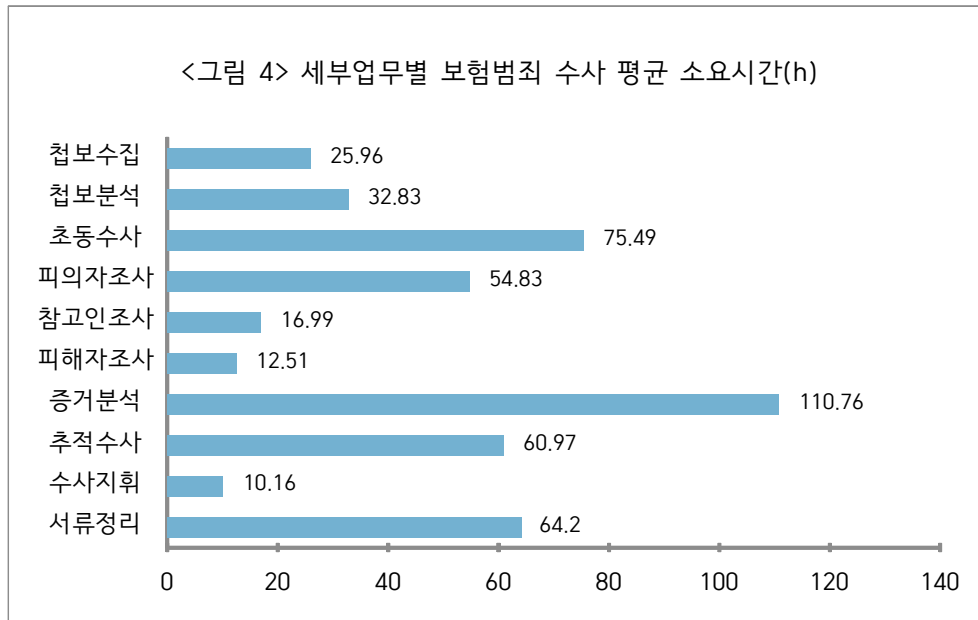
즉 수사관은 초동수사를 통해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기초 수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야하며 이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확보, 보험금 수령과 관계된 이해관계자 정황에 대한 조사, 병·의원에 대한 증거자료 압수, (자동차) 사고 현장 확보 및 증거채취 등에 대한 충실한 수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를 토대로 유죄증거를 가려내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입수 증거물·증거서류 자체 분석,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에 의 심사·분석 의뢰 등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초동수사와 증거분석이 보험범죄 수사에서 매우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 송치 전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의 수사보고서, 각종 조서, 사건 송치서 등 수사서류작성·정리업무가 약 64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영장집행, 목격자·참고인 탐문 등 추적수사가 약 61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첩보수집과 첩보분석 등이 약 58시간이 소요되어 내사 단계에서의 업무가 보험범죄 수사 프로세스에서 다른 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 세부업무별 보험범죄 수사 소요시간(h)

세부업무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첩보수집	265	0	240	25.96	37.305	4.170	20.189
첩보분석	262	0	720	32.83	99.822	5.317	30.024
초동수사	253	0	1440	75.49	186.018	4.568	25.145
피의자조사	258	2	600	54.83	111.865	3.152	9.345
참고인조사	261	0	320	16.99	34.015	6.967	55.314
피해자조사	252	0	240	12.51	17.972	8.579	102.903
증거분석	242	0	1440	110.76	212.599	3.922	18.831
추적수사	257	0	1280	60.97	150.210	7.196	54.209
수사지휘	251	0	240	10.16	24.783	7.554	63.658
서류정리	260	8	720	64.20	113.845	3.446	11.251
업무량 합계	210	20.0	2584.0	454.105	553.1549	2.093	3.550
유효수(목록별)	210						



한편 보험범죄의 수사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과 각 지방청 수사대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수사팀들은 인지사건에 대한 기획수사를 기본으로 주로 대형 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인지사건뿐만 아니라 첩보 내사업무 단계가 수반되지 않는 보험사의 고소고발 및 진정 사건, 단순 사기사건까지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과 지방청 수사팀은 수사사건 환경이 다르다. 즉 다양한 단서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찰서 지능팀과 대형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지방청 수사팀은 그 처리사건의 관계자 수, 처리시간 등 사건크기(업무량)이 다르다.¹¹⁾

다음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서 지능팀의 사건처리 평균 소요시간은 392.8시간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청 수사팀의 경우는

11) 실제 경기지방경찰청의 사례를 보면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우 연초부터 기획수사가 이루어져도 연간 보험사기 수사건수는 통상 1건 정도 진행되며, 경기청 관내 용인서부경찰서 지능팀의 경우 연간 5건 정도 처리한다고 한다.

1382.5시간으로 경찰서 지능팀에 비해 3.5배 이상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1> 경찰 관서별(경찰서/지방청) 보험범죄 수사 소요시간(h)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찰서 지능팀	첩보수집	245	0	240	25.24	36.075
	첩보분석	242	0	480	23.87	67.843
	초동수사	233	0	720	54.25	113.178
	피의자조사	239	2	480	43.89	92.363
	참고인조사	243	0	320	17.03	35.132
	피해자조사	234	0	240	12.15	18.227
	증거분석	224	0	1440	95.77	200.346
	추적수사	239	0	1280	60.06	154.620
	수사지휘	235	0	240	9.72	23.621
	서류정리	242	8	480	56.21	98.266
	업무량 합계	197	20.0	2400.0	392.838	477.4968
유효수(목록별)	197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방청 수사대	첩보수집	20	0	240	34.80	50.348
	첩보분석	20	8	720	141.20	255.173
	초동수사	20	12	1440	322.90	482.253
	피의자조사	19	12	600	192.42	210.473
	참고인조사	18	0	40	16.44	11.200
	피해자조사	18	4	50	17.17	13.798
	증거분석	18	24	800	297.33	272.777
	추적수사	18	3	240	73.06	70.041
	수사지휘	16	0	160	16.56	38.550
	서류정리	18	24	720	171.56	217.852
	업무량 합계	13	207.0	2584.0	1382.538	780.8080
유효수(목록별)	13					

보험종류별로 보험범죄의 처리 시간을 보면 생명보험이 약 527.7시간, 손해보험이 약 313.5시간, 사회보험이 390.9시간, 다중보험가입사건이 743.5시간으로, 2개 이상 다수 보험종목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중보험사기 사건은 앞선 <표 9>에서 보듯이 전체 사건 유형 중에서도 손해보험사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서(24.3%), 향후 보험사기 범죄의 복잡화(複雜化)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보험종류별 수사 평균 소요시간(h)

	생명보험		손해보험		사회보험		다중보험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첩보수집	60	27.07	133	22.25	8	15.00	64	34.00
첩보분석	59	64.47	133	18.50	8	38.75	62	32.68
초동수사	55	129.85	131	38.15	7	42.86	60	110.97
피의자시간	59	28.76	130	41.01	8	131.00	61	99.51
참고인시간	59	16.75	132	13.91	8	44.50	62	20.23
피해자시간	55	12.76	129	10.48	8	5.50	60	17.58
증거분석	50	127.36	123	60.94	8	50.00	61	205.57
추적수사	58	37.10	132	64.64	8	35.00	59	79.73
수사지휘	56	5.21	128	6.84	8	15.50	59	21.32
서류정리	59	44.37	131	46.63	8	39.50	62	123.39
업무량 합계	43	527.651	114	313.474	7	390.857	46	743.500
유효수 (목록별)	43		114		7		46	

보험종류별 사건 처리 시간 외에 세부 보험종목별 처리 시간을 살펴보

면 생명보험 사건 유형 중에서도 수사관들이 상해보험종목 사건으로 특정한 사건의 경우, 평균 약 515.5시간으로 여타 종목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에서의 상해의료보험 등 장기(長期) 손해보험 종목의 경우는 약 345시간이 걸렸으며, 손해보험에서도 대표적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장 많은 사건수로 처리되는 종목인 반면, 그 처리시간은 295.4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13> 보험종목별 수사 평균 소요시간(h)

	생보-상해보험		손보-자동차보험		손보-상해(상기손보)	
	N	평균	N	평균	N	평균
첩보수집	41	27.32	74	23.03	29	23.79
첩보분석	41	68.73	74	23.16	29	15.21
초동수사	38	159.63	72	40.72	29	50.55
피의자시간	41	31.29	72	40.32	28	50.43
참고인시간	41	14.24	73	15.48	29	10.83
피해자시간	39	11.03	73	10.77	28	10.14
증거분석	34	114.35	69	54.61	25	49.92
추적수사	40	37.40	73	29.48	29	167.55
수사지휘	38	5.21	70	6.93	28	7.46
서류정리	41	37.12	73	31.78	28	58.07
업무량 합계	31	515.452	64	295.406	22	344.955
유효수 (목록별)	31		64		22	

수사관의 사건 조사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교육·연가 등이 실시되어 수사업무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전체 수사 소요시간 중에 감안하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수사관들의 기본근무시간 및 연간 적정 업무량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손실 실태가 적정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관의 정상적인 직무교육과 개인연가 등에 의한 업무 손

실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에게 사건 송치까지 업무 수행 중 직무교육과 개인연가 등 업무 손실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전체 268명 중 80명이 교육과 연가 등이 있었다고 답하였다(<표 14>). 교육과 연가 사용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많았으나(175명) 최장 45일간 교육·연가가 있었던 경우도 있다(1명).

1일 이상으로 응답한 80명 중 가장 많은 26명의 인원이 4일의 교육·연가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20명이 2일의 교육·연가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1일 이상 응답 인원의 대다수인 62명이 2~4일간의 교육·연가 일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일 이상 교육·연가를 실시한 인원으로부터 구한 총 손실 일수는 467일이다. 또한 보험범죄 수사관의 1건당 1인 평균 손실일은 1.831일로 나타났다.

<표 14> 보험범죄 수사관의 건당 업무(조정) 손실

건당 손실일 (교육·연가)	인원 (명)	퍼센트	유효 퍼센트	손실 계 (건당 손실일 x 인원)	1건당 평균 손실일	
0	175	65.3	68.6	0	-	
1	5	1.9	2.0	5		
2	20	7.5	7.8	40		
3	16	6.0	6.3	48		
4	26	9.7	10.2	104		
5	1	.4	.4	5		
8	1	.4	.4	8		
10	2	.7	.8	20		
14	3	1.1	1.2	42		
20	2	.7	.8	60		
30	3	1.1	1.2	90		
45	1	.4	.4	45		
계	255	95.1	100.0	467		1.831
결측	13	4.9				
합계	268	100.0				

수사 프로세스에서의 조사과정을 통해서 이상 살펴본 수사 업무량(시간) 추정 외에도, 보험범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 조직적, 지능적 면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보험범죄 수사에서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소요시간 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숫자와 피의자 직업 등을 기초로 보험범죄의 조직적, 지능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다.

우선 피의자의 경우 단독 범행인 경우가 27%를 차지했고,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27.3%). 3명이 공모한 경우는 10.5%, 4명 공모인 경우 7.1% 등이었으며, 11명 이상이 연루된 경우도 17.6%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범죄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통상 다수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참고인 조사는 단순 사건의 경우 참고인 조사 없이 수사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10.0%), 보험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한 참고인 진술 구증 등이 중요하여, 대체로 1~3명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58.6%).

피해자조사 역시 피해자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3.2%), 통상 전체 사건의 절반 정도(50.0%)가 1~2명의 피해자(개인 또는 보험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15> 보험범죄 조사대상 관계자 인원 수

명	피의자 수				참고인 수				피해자 수			
	빈도	%	유효 %	누적 %	빈도	%	유효 %	누적 %	빈도	%	유효 %	누적 %
0	-	-	-	-	26	9.7	10.0	10.0	8	3.0	3.2	3.2
1	72	26.9	27.0	27.0	36	13.4	13.8	23.8	86	32.1	34.7	37.9
2	73	27.2	27.3	54.3	65	24.3	24.9	48.7	38	14.2	15.3	53.2
3	28	10.4	10.5	64.8	52	19.4	19.9	68.6	18	6.7	7.3	60.5
4	19	7.1	7.1	71.9	21	7.8	8.0	76.6	10	3.7	4.0	64.5
5	11	4.1	4.1	76.0	27	10.1	10.3	87.0	35	13.1	14.1	78.6
6-10	18	6.6	6.6	83.1	18	6.8	7.0	93.9	19	7.1	7.6	86.3
11 이상	46	17.6	17.6	100.0	16	6.0	6.3	100.0	34	12.8	13.6	100.0
계	267	99.6	100.0		261	97.4	100.0		248	92.5	100.0	
결측	1	.4			7	2.6			20	7.5		
합계	268	100.0			268	100.0			268	100.0		

보험범죄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자 숫자 외에 그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무직자 등과 같은 일반인들 외에도 다양한 보험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전체 268건의 사건 중 121건의 사건에서 보험 관련 종사자 등 전문가들이 보험범죄에 개입되었으며(45.1%). 여기에는 보험사직원, 보험 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직접적인 보험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34.7%를 차지하였다.¹²⁾

12) 금융감독원 발표에서도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인원(검찰송치 기준)은 지난 2009년 260명에서, 2010년 268명, 2011년 266명, 2012년 307명, 2013년 245명 등으로 최근까지 보험 전문지식을 보험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업계에서 퇴출(보도자료)”, 2014. 7. 15.

다음으로 의사, 간호사, 사무장 등 병원 종사자가 21.5%를 점하고 있다. 그밖에 정비업 종사자(6.6%), 운수업 종사자(18.2%),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등도 피의자로 사건에 개입되었다.

주목할 것은 하나의 보험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의 보험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공모하는 사건들의 비중도 적지 않게 나타나(13.2%) 지능적이면서도 동시에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피의자들의 직업

	빈도(사건)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험업 종사자	42	15.7	34.7	34.7
병원 종사자	26	9.7	21.5	56.2
정비업 종사자	8	3.0	6.6	62.8
운수업 종사자	22	8.2	18.2	81.0
사기 전문 브로커	4	1.5	3.3	84.3
기타 보험관련 전문가	3	1.1	2.5	86.8
복수의 전문가들 (연루)	16	6.0	13.2	100.0
계	121	45.1	100.0	
일반인	147	54.9		
합계	268	100.0		

3) 보험범죄 수사의 착안점 분석

본 연구는 ① 초기수사 업무, ② 본 수사업무, ③ 수사 마무리 업무 등 수사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량을 추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관협력, 수사기법, 증거분석역량, 조사인프라, 법제도 등을 분석요소로 하여 수사

착안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구체적인 수사 착안점으로서 초기수사의 경우 내사단계에서 범죄 첩보 filtering(정보협력), 초동수사 이후의 유관기관 수사지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범죄첩보 수집, 범죄(첩보) 사실의 확인 등 내사단계에서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 필요성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 수사관 263명 중 79.5%인 209명의 경찰관이 매우 강한 협력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보통 수준의 필요성도 11.0%로 나타나, 보통이상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느끼는 정보협력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90.5%).

<표 17> 내사단계 기관협력 필요도

	빈도(명)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필요 없음	3	1.1	1.1	1.1
약간	22	8.2	8.4	9.5
보통	29	10.8	11.0	20.5
상당	209	78.0	79.5	100.0
계	263	98.1	100.0	
결측	5	1.9		
합계	268	100.0		

유관기관(금감원, 보험협회, 보험사, 병·의원 등) 가운데서도 정보협력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낀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 수사관 264명 중 38.6%(102명)이 보험사를 지적하였다. 이는 보험계약 내용과 보험금 수급자 등 보험사기 관련 상품 사고 내역을 해당 보험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병·의원 17.0%, 보험협회 11.4%, 금융감독원 11.4%로 나타났

고 기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도 있었다(2.7%). 또한 17.5%의 수사관들이 복수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적하여 범죄정보 내사단계에서 상
기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8> 내사단계 협력필요 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응답	금감원	30	11.2	11.4
	보험협회	33	12.3	23.9
	보험사	102	38.1	62.5
	병·의원	45	16.8	79.5
	기타	7	2.6	82.2
	복수기관 응답	47	17.5	100.0
	합계	264	98.5	100.0
결측	4	1.5		
합계	268	100.0		

수사 개시 후 증거자료의 분석 등을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수사지
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 수사관 266명 중 76.3%인 203명
의 수사관들이 매우 강한 협력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보통 수준의 필요성도 12.4%로 나타나, 보통이상 대부분의 수사
관들이 느끼는 정보협력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88.7%).

<표 19> 수사 개시 후 수사지원 필요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응답	필요 없음	9	3.4	3.4
	약간	21	7.8	11.3
	보통	33	12.3	23.7
	상당	203	75.7	100.0
	계	266	99.3	100.0
결측	2	.7		
합계	268	100.0		

유관기관(금감원, 보험협회, 보험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중에서도 수사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기관이 어느 곳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 수사관 263명 중 31.2%(82명)이 보험사를 지적하였다. 이는 내사 단계의 정보협력의 경우와 같이 보험사기 수사에서도 보험사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5%, 보험협회 11.4%, 건강보험공단 9.1%, 금감원 8.4%로 나타났고 기타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용노동청, 의료분석업, 이통사 등의 의견도 있었다(1.1%). 또한 수사지원기관에 대해 13.3%의 수사관들이 특정 1곳이 아닌 복수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적하여, 수사단계에서 상기 유관기관들로부터의 전문적인 증거분석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0> 수사 개시 후 지원필요 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응답	금감원	22	8.2	8.4
	보험협회	30	11.2	11.4
	보험사	82	30.6	31.2
	건강보험공단	24	9.0	9.1
	심사평가원	67	25.0	25.5
	기타	3	1.1	1.1
	복수기관 응답	35	13.1	13.3
합계	263	98.1	100.0	
결측	5	1.9		
합계	268	100.0		

보험범죄 수사 중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사회보험(건강,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 종류별 대응과 수사기법 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 수사관 265명 중 70.6%(187명)가 그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답하였다.

또한 보통 수준의 필요성도 19.6%로 나타나, 보통이상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느끼는 보험 종류별 대응과 수사기법 개발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90.2%).

<표 21> 보험 종류별 대응과 수사기법 개발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응답	필요 없음	3	1.1	1.1	1.1
	약간	23	8.6	8.7	9.8
	보통	52	19.4	19.6	29.4
	상당	187	69.8	70.6	100.0
	계	265	98.9	100.0	
	결측	3	1.1		
	합계	268	100.0		

전문적 수사기법 개발 필요성이 큰 유형으로는 응답 수사관 260명 중 46.9%가 상해보험을 지적하였다. 이는 의료 분석 등 전문성이 높고 수사과정에서 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 응답 수사관의 32.3%가 자동차보험, 15.4%가 사회보험에 대한 대응과 수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또한 4.6%의 수사관들이 복수 보험종류에 대해 그 필요성을 지적하여 보험 종류별 대응과 수사기법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2> 전문 수사기법 개발이 필요한 보험 종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자동차보험	84	31.3	32.3	32.3
	상해보험(생보 및 손보)	122	45.5	46.9	79.2
	사회보험	40	14.9	15.4	94.6
	기타	2	.7	.8	95.4
	복수종류 응답	12	4.5	4.6	100.0
	합계	260	97.0	100.0	
	결측	8	3.0		
	합계	268	100.0		

수사관들의 보험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물 분석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개시 후 외부로부터 전문인력의 상시지원(파견, TF 구성 등)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수사관 266명 중 56.0%가 매우 강한 협력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보통 수준의 필요성도 27.1%로 나타나, 보통이상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느끼는 전문인력 상시지원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83.1%).

<표 23> 전문인력의 상시지원(파견, TF 구성 등)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응답	필요 없음	15	5.6	5.6	5.6
	약간	30	11.2	11.3	16.9
	보통	72	26.9	27.1	44.0
	상당	149	55.6	56.0	100.0
	계	266	99.3	100.0	
	결측	2	.7		
	합계	268	100.0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을 위한 조사시설 인프라(별도 조사실 등)의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 수사관 265명 중 51.7%가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시설 확충에 대해 보통 수준의 필요성을 답한 수사관도 29.8%로 나타나,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조사시설 인프라의 개선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1.5%).

<표 24> 조사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응답	필요 없음	20	7.5	7.5	7.5
	약간	29	10.8	10.9	18.5
	보통	79	29.5	29.8	48.3
	상당	137	51.1	51.7	100.0
	계	265	98.9	100.0	
	결측	3	1.1		
	합계	268	100.0		

수사관들이 사건 수사 후 피의자 의율(擬律)단계에서 별도의 죄명(보험범죄) 또는 세부죄종에 따른 차별적 처벌 조항 마련 등 적용 법제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응답 수사관 264명 중 76.9%가 개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답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31.8%의 수사관들이 보험사기방지법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형법 내 처벌 조항 신설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한 의견이 22.3%였다.

<표 25> 보험사기 관련 법규 개선에 대한 수사관들의 의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현행유지	개정 불필요	61	22.6	23.1
제·개정	형법개정 (처벌조항 신설)	59	21.9	22.3
	특별법 제정 (보험사기방지법)	84	31.1	31.8
	보험업법 개정 (처벌조항 신설)	49	18.1	18.6
	복수 응답	11	4.1	4.2
	제·개정 의견 합계	203	75.2	76.9
	계	264	97.8	100.0
	결측	6	2.2	
	합계	270	100.0	

IV. 보험범죄 수사역량 제고방안

1. 인력 증원: 지능팀 보험범죄 수사 인력의 증원

1) 수사 경찰관의 적정 업무량의 검토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보험범죄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업무량 측정과 함께 업무손실 등이 반영된 지능수사팀 내 보험범죄 수사인력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수사 경찰관의 사건처리 소요시간과 근무가능일수 등을 고려한 적정 업무량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능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은 내사에서부터 본 수사, 수사 마무리 조치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 접수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연간 가용한 기본 근무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이론 모형(basic model)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div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 식 (1)

단,

$$L_y = 1\text{일 기본 근무시간}(L_h) \times \text{연간 기본 근무일수}(L_d),$$

$$\bar{h} = \frac{\sum h_i}{N}, \text{ 여기서 } h_i = \text{개별 사건 } i \text{의 처리 소요시간, } N = \text{전체 사건 수.}$$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을 나타내는 위의 모형은 지능팀 수사관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기본 근무시간을 1건당 평균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눈 모형으로서 범죄 유형 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이론적 업무추정량 모형이다.

그러나 업무 현실에서는 업무의 난이도가 상이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고, 이러한 사건 유형을 고려하여 위의 1인당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을 다시 구성하면,

$$\text{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 \text{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div \text{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 \quad \text{----- 식 (2)}$$

단, 여기서 \bar{h} 는 사건 유형별 차이가 고려되어

$$\bar{h} = \frac{\sum(\text{유형별 건수} \times \text{유형별 평균 소요시간})}{\sum \text{유형별 건수}}$$

로서 산출된다.

$$\text{위의 식에서 } \bar{h} \text{을 다시 써보면, } \bar{h} = \frac{\sum n_i \bar{h}_i}{\sum n_i},$$

여기서 n_i = 유형 i 의 사건수, \bar{h}_i = 유형 i 사건의 평균 소요시간.

위 모형은 식 (1)의 기본 모형과 기본 산식에서 동일하다. ($W_n = L_y \div \bar{h}$) 그러나 \bar{h} 의 산출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본 모형의 식 (1)은 \bar{h} 을 구할 때, 개별 사건들에 소요되었던 시간을 단순히 모두 더하고($\sum h_i$)

이를 전체 사건(N)으로 나눈다($\bar{h} = \frac{\sum h_i}{N}$). 반면 식 (2)에서의 \bar{h} 는 사건 유형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기 상이한 사건 유형별 소요시간을 적용하여 구해진다.¹³⁾

2) 지능팀의 보험범죄 전담수사인력 표준안

지능팀내 보험범죄 전담수사 필요인력의 산출을 위한 인력표준안 설계에는 앞선 적정 업무량 모형에서 적용되었던 1인당 연간 근무시간(L_y),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등의 개념과 기본 식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의 전체 규모, 즉 경찰청(P) 전체 수준에서 보험범죄 전담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사관 인원(L_p)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보험범죄 전담수사팀 인력표준안(기본 모형)]

$L_p = \text{경찰청 연간 보험범죄 사건처리 소요시간 } (H_p) \div \text{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text{ ----- 식 (3)}$

단, $H_p = \text{사건수}(N_p) \times \text{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

13) 식 (2)는 업무 난이도가 반영된 사건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적정 업무량이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적정 업무량 기본모형의 구축과 확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pp. 34-35;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pp. 124-125; 정웅, 윈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 2014.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위의 모형에 따라 경찰청(P)의 보험범죄 전담수사팀 전담팀의 필요인력(EL_p)을 산출해 보면, 보험범죄 사건수(N_p)는 <표 3>의 최근 2년(2011~2012) 평균 사건 수 2487건¹⁴⁾, 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은 앞선 <표 10>에 추정결과에서 454.105시간,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은 2010~2013년 4년 평균 2,002시간¹⁵⁾을 적용한 결과, $2487\text{건}(N_p) \times 454.105\text{시간}(\bar{h}) \div 2002\text{시간}(L_y) = 564.115\text{명}$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 기본 모형에서는 사건처리 중 연가·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손실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험범죄 전담수사팀 수사관들의 사건당 평균 업무손실 시간(\bar{h}_e)은 <표 7>에서 보듯이 사건당 평균 1.831일(=14.648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가·교육 등으로 실제 근무할 수 없는 시간인 업무손실 시간(14.648시간)을 포함한 확장 모형에서의 평균 소요시간을 최종 산정하면 $\bar{h}_e = 14.648 + 454.105 = 468.753\text{시간}$ 으로 결정된다.

보험범죄 전담수사팀 인력표준안을 확장 모형으로 다시 쓰면,

- 보험범죄 전담수사팀 인력표준안(확장 모형)

$$EL_p = EHp \div L_y, \quad \text{단, } EHp = N_p \times \bar{h}_e, \quad \bar{h}_e = \bar{h}_m + \bar{h}_c,$$

\bar{h}_e = 전담수사팀 확장모형의 평균 소요시간,

\bar{h}_m = 전담수사팀 기본모형의 평균 소요시간,

\bar{h}_c = 전담수사팀 업무 중 사건당 평균 손실시간이다

확장 모형에 따라 경찰의 보험범죄 전담수사팀의 필요인력(EL_p)을 다

14) 2011년 2231건, 2012년 2742건 발생.

15) 4년 평균 2,002시간(L_y)= 1일 8시간(L_h) \times 연평균 기본근무일 250.25일(L_d). 연간 기본근무일수는 2010년 251일, 2011년 249일, 2012년 252일, 2013년 249일이었다.

시 산출해 보면, $2487\text{건}(N_p) \times 468.753\text{시간}(\bar{h}) \div 2002\text{시간}(L_y) = 582.312\text{명}$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찰청 규모의 필요인력 외에 각 지역별(지방경찰청별) 전담팀 수사관 필요인력(L_i) 및 산출해 보면,

$$\sum L_i = \frac{\sum H_i}{L_y}, \quad H_i = n_i \times \bar{h}_e$$

단, $L_i = i$ 지방경찰청의 전담수사팀 필요인원,

$H_i = n_i \times \bar{h}_e = i$ 지방경찰청의 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n_i = i$ 지방경찰청의 연평균 사건수이다.

전국 지방청에 대해 $\bar{h}_e = 468.753\text{시간}$ 과 $L_y = 2,002\text{시간}$ 을 적용하여 그 필요인력을 산출해보면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 2011~2012년 2년간 평균 628.0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147.041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평균 513.0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기청이 120.115명, 244.0건의 사건이 발생한 서울경찰청이 57.130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표 26> 각 지방청별 보험범죄 전담수사팀 필요인원

구 분	보험범죄사건 발생건수 (2011~2012년, 2년평균)	필요인원(명)
서울청	244.0	57.130
경기청	513.0	120.115
부산청	628.0	147.041
대구청	200.0	46.828
인천청	111.0	25.989
광주청	88.0	20.604
대전청	164.0	38.399
울산청	20.0	4.682
강원청	65.0	15.219
충북청	81.0	18.965
충남청	140.5	32.779
전북청	22.0	5.151
전남청	61.0	14.282
경북청	47.5	11.121
경남청	93.0	21.775
제주청	8.5	1.990
계	2,486.5 건	582.07

이처럼 보험범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적정 수사 인력은 경기청 120명, 부산청 147명을 비롯하여 전국 규모에서 약 58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현재 전국에 보험범죄 전담수사팀 인원은 적정 필요인력보다 적은 495명이다.

그나마도 이 인력(495명)은 현재 지능팀 내 인원 중에서 보험범죄 전담수사요원으로 지정된 것일 뿐, 보험범죄만을 위한 별도 조직 편제 아

래 소속된 것이 아니다. 즉 이른바 “보험범죄 전담수사팀”의 “보험범죄 전담수사요원”이더라도 실제로는 지능팀 수사인력으로서 보험사기사범 외에도 여타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범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또한 팀 내 주요 담당업무인 선거사범, 집회시위사범, 공무원범죄 등도 다루게 된다.

따라서 지능팀에서 현재와 같이 보험범죄 사건을 처리할 경우, 상기 보험범죄 업무 관련 적정 인력을 고려하여 지능팀 내에 전담수사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2. 기관 협력: 정보 및 증거분석 협력 체계의 구축

내사 등 초기수사와 본 수사 등 수사 프로세스에서 기관협력과 증거분석역량이라는 분석요소를 통해 보면, 보험범죄수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서는 보험 유관기관들과의 정보 및 수사지원(증거분석지원)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이 발견된다.

앞선 <표 17>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응답 수사관의 79.5%가 첩보수집 등 내사단계에서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 필요성을 매우 크게 느낀 것으로 답하였다. 수사관들은 보험 유관기관 가운데서도 보험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38.6%). 이밖에 병·의원 17.0%, 보험협회 11.4%, 금융감독원 11.4%의 순으로 나타나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복수 기관들과의 정보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 수사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세부업무는 증거물에 대한 분석(약 111시간)이다. 수사 개시 후 이러한 증거물 분석 등을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수사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응답 수사관 중 76.3%가 매우 강한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되었고 보

통 수준의 필요성도 12.4%로 나타나, 보통이상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느끼는 수사지원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88.7%). 유관기관 중에서도 수사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31.2%가 보험사를 지적하였다. 이는 내사 단계의 정보협력의 경우와 같이 본 수사 단계에서도 보험사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5%, 보험협회 11.4%, 건강보험공단 9.1%, 금감원 8.4%로 나타났고, 또한 수사지원기관에 대해 13.3%의 수사관들이 특정 1곳이 아닌 복수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적하여, 수사단계에서 상기 유관기관들로부터의 전문적인 증거분석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증거물 분석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수사 개시 후 외부 전문인력의 “상시지원”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수사관 중 56.0%가 매우 강한 협력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보통 수준의 필요성도 27.1%로 나타나, 보통이상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느끼는 상시지원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83.1%).

이상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할 때, 보험범죄수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들과 정보 및 증거분석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복수의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시지원체계 형태가 바람직하다.

즉 지방청 지능수사대 단위에서는 기존의 이른바 「보험사기수사협의회」¹⁶⁾를 활성화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 일선 경찰서 팀 단위의 경우에는 광역시·도 아래의 연접 시·군 단위를 한데 묶어 보험사가 주로 참

16) 수사협력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전국 주요지역별로 금감원, 경찰, 보험회사 SIU 등으로 구성된 소위 「보험사기수사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보험사기 수사체계 강화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즉 동 협의회는 보험사기 다발 지역에 금감원, 협회, 보험회사, 지방경찰청 등에서 참여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밀착 수사 지원을 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근절 대책(보도자료)”, 2014. 7. 24.

여하는 지원체계(과건, TF 구성 등) 형태의 수사협력체 구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수사 기법: 보험유형별 대응과 수사 기법의 개발

수사관들이 처리한 보험범죄 사건을 보험종류별로 보면, 대분류 기준(생명, 손해, 사회보험, 다중보험)으로 손해보험이 가장 많은 49.6%(133건)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복수의 보험종목에 가입되어 다중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건이 24.3%(65건)이었고, 이와 비슷한 비중으로 생명보험 사건이 23.1%(62건)을 차지하였으며, 그 수는 적으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사건(2.9%) 등도 나타나고 있다. 세부 보험종목 기준으로는 손해보험 중에 자동차보험이 74건(27.6%)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러한 보험종류별 사건들을 유형화하여 해당 보험범죄 사건유형의 처리 시간을 보면 다중보험가입사건이 약 743.5시간, 생명보험이 527.7시간, 사회보험이 390.9시간, 손해보험이 313.5시간으로 나타났다. 세부 보험종목 기준으로 처리 시간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중에서 상해보험 사건이 평균 약 515.5시간으로 여타 종목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에서의 상해의료보험 등 長期손해보험의 경우는 약 345시간이 걸렸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295.4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개 이상 다수 보험종목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다중보험 사건유형이 소위 보험범죄의 복잡화 양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발생사건 건수에서도 손해보험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사건 처리에도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중보험사

기 사건은 경찰에서 가장 주목해서 대응해야할 사건유형이다.

<표 27> 보험종류별(다중, 단일보험) 수사 소요시간에 대한 집단통계량

보험 종류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다중 보험	46	743.500	705.7424	104.0560
단일 보험(생명, 손해)	157	372.134	475.8536	37.9773

다중보험 사건과 여타 단일 보험사건 간에 평균 소요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한가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그 차별적 대응 필요성이 나타난다.

일단 <표 27>의 보험종류별 두 집단 기술통계량에서 보듯이 다중보험 사건의 처리 시간 평균은 743.5시간, 단일보험(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 처리 시간 평균은 372.134시간으로 두 집단 간 수사시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보험종류별(다중 및 단일보험) 수사 소요시간에 대한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 가정	18.550	.000	4.133	201	.000	371.3662	89.8566	194.1838	548.5487
등분산 가정 없음			3.353	57.492	.001	371.3662	110.7697	149.5949	593.1376

t-검증에서는 <표 28>에 보듯이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test 검증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t-value가 3.353이고 p-value가 .001로 나타나 $\alpha = .05$ 에서 두 집단 간 평균에 동일성이 있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두 사건 집단간 평균 소요시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가설이 채택된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보험사기 수사업무가 보험 유형별로 약 두 배에 가까운 소요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유의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보험사건 유형 및 그 난이도에 따라서 차별적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손해보험 종류(범주) 중에서도 대표적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경우가 가장 많은 사건수로 처리되는 종목인 반면, 그 처리시간은 295.4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상해보험 사건 처리는 생명보험(상해보험)이 약 515.5시간으로 자동차보험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보험(상해의료 長期손해보험)에서도 약 345시간이 걸려, 자동차보험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보험종류와 세부 보험종목별로 나타나는 이 같은 상이한 발생빈도와 소요시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은 적어도 다중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에 대해서는 사건유형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착안점에서 수사관들에게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사회보험 등 보험유형별 대응과 그 수사기법 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 수사관의 70.6%가 그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답하였다. 또한 보통 수준의 필요성도 19.6%로 나타나, 보통이상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느끼는 보험 종류별 대응과 수사기법 개발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90.2%).

4. 시설 확충: 관계자조사 및 증거분석을 위한 시설 인프라의 개선

보험범죄 사건 1건당 담당 수사관수를 보면 2명이 처리한 경우가 31.7%이고, 2명이상 최대 12명까지 투입되어 복수의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 비중이 전체의 과반이 넘는 53.4%로 나타나 보험범죄 수사가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해 많은 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처리 수사기간도 1개월 이내에 종결한 것이 9건(3.4%), 2개월 이내 종결한 경우 37건(13.8%), 3개월 이내가 63건(23.5%)에 불과한 반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처리사건이 77건(28.7%), 6개월 초과 처리사건이 가장 많은 82건(30.6%) 등으로 나타나 보험범죄 사건의 수사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보면 단독 범행인 경우가 27%를 차지한 반면, 2명인 경우 27.3%, 3명이 공모한 경우는 10.5%, 4명 공모인 경우 7.1% 등이었으며, 11명이 연루된 경우도 17.6%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범죄가 통상 다수가 공모하는 조직적 사건으로 많은 관계자 조사 업무가 수반되어야함을 나타낸다.

복수의 수사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관계자들을 조사해야하는 보험사기사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공간 등 조사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범죄 수사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증거분석인데, 이러한 증거물에 대한 확보와 보관, 분석결과의 검토 등을 위해서도 지능팀의 일반 사무공간 이외에 조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을 위한 조사시설 인프라의 확충에 대하여 응답 수사관 265명 중 51.7%가 상당한 수준의 개선 필

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보통 수준의 필요성을 답한 수사관도 29.8%로 나타나,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별도 조사실 등 조사시설 인프라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1.5%).

5. 법제 개선: 적용법조의 명확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보험사기, 보험범죄에 대한 별도의 법률 또는 죄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보험사기’, ‘보험범죄’는 법률상의 개념이라기보다 오히려 경찰실무자, 언론 또는 정책 당국 등에서 다양한 보험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루게 될 때 보험과 관련된 범죄 전반을 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앞서 보듯이 보험범죄와 관련된 죄종을 보면, 대체로 보험관련 범죄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형법상의 사기 조항을 의율(擬律)하여 보험사기의 죄종으로 나타나고(90.7%), 그밖에 고액의 사기, 횡령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조항을 적용하여 특경법범으로 나타나기도 하며(3.0%), 기타 상해죄, 의료법 위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각종 범죄의 경합범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험범죄의 다양화, 조직화, 지능화, 전문화 양상과 함께 점차 확대되는 보험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명

17) 다만, 법률상으로 보험범죄 달리 ‘보험사기’의 경우는 2008.6.15일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2008.3.14, 일부개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보험사기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그 용어가 쓰여 왔고, 현행 보험업법 [법률 제10394호, 2010.7.23, 일부개정] 제102조의2에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보험사기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도 보험사기의 용어만 있을 뿐 그 개념정의 및 처벌조항은 없다.

확한 죄명 신설과 정의, 보험범죄에 포함되는 불법행위의 범주, 각종 보험범죄의 세분화 등 보험범죄 적용법제의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보험범죄 수사관들은 피해자 조사와 의율 단계에서 현행법상 죄명이 없는 보험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피의자들의 죄의식 부재와 적용법조의 미비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보험범죄 적용 법규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응답 수사관의 76.9%가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방향으로 보험사기방지법 등 특별법 제정(31.8%), 그 다음으로 형법 내 처벌 조항 신설(22.3%)¹⁸⁾ 등 수사관 대부분이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답하였다(76.9%).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범죄의 비도덕성, 불법성을 명백히 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

18) 독일 형법이 내 처벌조항을 둔 대표적 사례이다. 독일은 형법 개정(1998. 10)을 통해 이전 형법 제265조의 보험사기죄를 보험남용죄로 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개정 전 형법 제256조는 보험사기가 단지 화재·해상보험이라는 두 개의 보험영역에만 한정되었으나, 개정 형법 제265조 제1항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파괴, 그 사용을 침해·제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제265조 제2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 265 (2) Der Versuch ist strafbar)을 두어 보험사기죄를 강화하였다. Strafgesetzbuch (StGB, 1998), § 265(Versicherungsmißbrauch).

V. 결 론

보험범죄 수사 업무량(건당 평균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개관해 보면, 첩보수집에 25.96시간, 첩보분석 32.83시간, 초동수사 75.49시간, 피의자조사 54.83시간 참고인조사 16.99시간, 피해자조사 12.51시간, 증거분석 110.86시간, 추적수사 60.97시간, 수사 지휘 10.16시간 서류정리 64.12시간 등 1건당 평균 454.1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증거분석으로 약 11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 초동수사가 약 76시간이었다. 이는 보험범죄가 전형적인 지능범죄로서 초동수사에서 범죄사실과 유죄증거의 확보, 아울러 본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분석이 매우 핵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도출된다.

첫째, 실질적인 보험범죄 전담수사인력이 확보·증원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적정 업무량 추정 모형(확장 모형)에 따라 경찰의 보험범죄 전담수사팀의 필요인력(EL_p)을 산출해 보면, 적정 수사 인력은 경기청 120명, 부산청 147명을 비롯하여 전국 규모에서 약 58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현재 전국에 보험범죄 전담수사팀 인원은 적정 필요인력보다 적은 495명이다.

그나마도 이 인력(495명)은 현재 지능팀 내 인원 중에서 보험범죄 전담수사요원으로 지정된 것일 뿐, 보험범죄만을 위한 별도 조직 편제 아

래 소속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능팀에서 현재와 같이 보험범죄 사건을 처리할 경우, 상기 보험범죄 업무량 및 적정 인력을 고려하여 지능팀 내에 전담수사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 유관기관들과 정보 및 증거분석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응답 수사관의 79.5%가 첩보 수집 등 내사단계에서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 필요성을 매우 크게 느낀 것으로 답하였으며, 보험 유관기관 가운데서도 보험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38.6%). 이밖에 병·의원 17.0%, 보험협회 11.4%, 금융감독원 11.4%의 순으로 나타나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복수 기관들과의 정보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 수사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세부업무는 증거물에 대한 분석(약 111시간)이다. 수사 개시 후 이러한 증거물 분석 등을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수사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응답 수사관 중 76.3%가 매우 강한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되었고 보통 수준의 필요성도 12.4%로 나타나, 보통이상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느끼는 수사지원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88.7%). 유관기관 중에서도 수사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31.2%가 보험사를 지적하였다. 이는 내사 단계의 정보협력의 경우와 같이 본 수사 단계에서도 보험사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증거물 분석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수사 개시 후 외부 전문인력의 “상시지원”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수사관 중 56.0%가 매우 강한 협력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보통 수준의 필요성도 27.1%로 나타나, 보통이상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느끼는 상시지원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83.1%).

이상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할 때, 보험범죄수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들과 정보 및 증거분석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복수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시 지원체계(과건, TF 구성 등) 형태가 바람직하다.

셋째, 수사기법의 측면에서, 보험유형별 대응과 수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험범죄 유형 중 2개 이상 다수 보험종목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다중보험 사건유형이 소위 보험범죄의 “복잡화” 양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발생사건 건수에서도 손해보험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사건처리에도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다중보험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가장 주목해서 대응해야할 사건유형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장 많은 사건수로 처리되는 종목인 반면, 그 처리시간은 295.4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상해보험 사건 처리는 생명보험(상해보험)이 약 515.5시간으로 자동차보험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보험(상해의료보험 등 長期손해보험)에서도 약 345시간이 걸려, 자동차보험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보험종류에 따른 이 같은 상이한 발생빈도와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경찰은 적어도 다중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사건유형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험유형별 대응과 그 수사기법 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도 응답 수사관의 70.6%가 그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답하였다. 또한 보통 수준의 필요성도 19.6%로 나타나, 보통이상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느끼는 보험 종류별 대응과 수사기법 개발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90.2%).

넷째, 조사시설의 측면에서, 관계자조사 및 증거분석을 위한 시설인 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보험범죄 사건 1건당 담당 수사관수를 보면 2명이 처리한 경우가 31.7%이고, 2명이상 최대 12명까지 투입되어 복수의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 비중이 전체의 과반이 넘는 53.4%로 나타나 보험범죄 수사가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해 많은 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처리 수사기간도 1개월 이내에 종결한 것이 9건(3.4%), 2개월 이내 종결한 경우 37건(13.8%), 3개월 이내가 63건(23.5%)에 불과한 반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처리사건이 77건(28.7%), 6개월 초과 처리사건이 가장 많은 82건(30.6%) 등으로 나타나 보험범죄 사건의 수사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보면 경우 단독 범행인 경우가 27%를 차지한 반면, 2명인 경우 27.3%, 3명이 공모한 경우는 10.5%, 4명 공모인 경우 7.1% 등이었으며, 11명이 연루된 경우도 17.6%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범죄가 통상 다수가 공모하는 조직적 사건으로 많은 관계자 조사 업무가 수반되어야함을 나타낸다.

복수의 수사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관계자들을 조사해야하는 보험사기사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공간 등 조사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범죄 수사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증거분석인데, 이러한 증거물에 대한 확보와 보관, 분석결과의 검토 등을 위해서도 지능팀의 일반 사무공간 이외에 조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법제 개선 측면에서, 적용법조의 명확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요망된다.

보험범죄의 복잡화, 조직화, 지능화 양상과 함께 점차 확대되는 보험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명확한 죄명 신설과 정의, 보험범죄에 포함되는 불법행위의 범주, 각종 보험범죄의 세분화 등 보험범죄 적용법제의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현장 조사에서도 수사관들은 피해자 조사와 의율 단계에서 현행법상 죄명이 없는 보험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피의자들의 죄의식 부재와 적용법조의 미비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범죄 적용 법규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응답 수사관의 76.9%가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방향으로 보험사기방지법 등 수사관 대부분이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답하였다(76.9%).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혹은 형법 내 처벌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보험범죄의 비도덕성, 불법성을 명백히 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

한편 본 연구는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능팀 내 보험범죄 전담수사 인력의 증원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지능팀이 담당하는 여러 종류의 사건 범주 및 그 업무량을 전체적으로 추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무엇보다도 지능팀 전체에서 처리되는 사건 종류와 업무량 추정이 선행되고, 이를 통해 그 부분 업무인 보험범죄라는 사건들의 크기(업무량)와 업무 비중이 측정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역으로 지능팀 담당 사건들 중 매우 부분적인 보험사건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지능팀의 보험범죄 전담수사를 위한 적정인력을 산출하였으나 지능팀 전체 업무에서 바라본, 지능팀 차원의 진정한 업무 흐름(process)과 적정 인력 규모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팀

혹은 성폭력 전담수사팀에 대한 선행 연구¹⁹⁾에서와 같이, 향후 지능팀 전체의 사건처리 업무프로세스와 그 업무량, 보험범죄를 포괄한 지능범죄의 각 유형별 난이도 추정 등이 연구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험업 유관 기관, 즉 보험업계나 보험감독기관 등으로부터의 보험범죄 수사 기대에 비해, 사실상 그 업무수행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보험범죄는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서도 그 수사가 매우 장기간에 걸친, 높은 난이도의 사건으로서, 지능팀이 현재의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보험범죄만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지능팀은 집회시위사범, 선거사범, 공무원범죄, 금융사기 등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며, 보험범죄는 대출사기와 보이스포싱과 같이 현재로서 지능팀이 담당해야만 하는 난해한 금융사기 사건유형 중의 하나일 따름이다.

19) 정 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정 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참 고 문 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 송윤아, 보험사기 방지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2010.
 이윤 외,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12.
 이천현, 중국의 금융사기범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 응, 한국 금융범죄의 유형분석과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2.
 정 응,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012.
 주학중 편,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2. 논문 및 기타

- 경찰청,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 2,292명 검거(보도자료)”, 2009. 6. 2
 경찰청·금융감독원, “경찰청·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보도자료)”, 2009. 5. 4.
 경찰청, “보험사기 단속실적”, 2014.
 경찰청, “보험사기 2개월 특별단속 실시(보도자료)”, 2014. 7.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보도자료)”, 2012. 7. 12.
 금융감독원, “2012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보도자료)”, 2013. 3. 11.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업계에서 퇴출(보도자료)”,
 2014. 7. 15.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근절 대책(보도자료)”, 2014. 7. 24.
 정 응,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실태와 제도적 대응방향”,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9.

정 응,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정 응, “한국 사회보험범죄의 양상과 실효적 대응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2013.

정 응,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정 응, “한국 금융범죄의 유형과 범정부적 대응과제”, 대한정치학회보, 제22권제 2호, 2014.

황성현, “경찰예산규모의 적정화와 운용의 효율화”, 한국개발연구원, 1992.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Eide, Erling, Rubin, Paul H., and Shepherd, Joanna M., *Economics of Crime*, Hanover: now Publishers Inc., 2006.

Pickett, K.H. Spencer and Jennifer M. Pickett, *Financial Crime Investigation and Control*,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2.

Winter H., *The Economics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New York: Routledge, 2008.

The Vancouver Police, *Patrol Deployment Study*, 2007. 2. 5.

2. 논문

Becker, Gary G.,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Petter, Gottschalk, “Categories of financial crime”, *Journal of Financial Crime*, Vol. 17, Issue 4, 2010.

Ⅲ. 인터넷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독일 형법 원문, Strafgesetzbuch(StGB)”,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law/17831/original?astSeq=384> (검색일: 2014. 12. 20).

American Health Lawyers Association, “Anti-Kickback Statute”, <http://www.healthlawyers.org/hlresources/Health%20Law%20Wiki/Anti-Kickbak%20Statute.aspx> (검색일: 2014. 12. 20).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Organizational Chart”, https://www.nicb.org/about-nicb/organizational_structure/organizational_chart (검색일: 2014. 12. 20).

[부 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박대동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3. 8. 27.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처벌·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보험사고의 원인·시기·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상(死傷)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업무) ① 국가는 보험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조

사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사기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2. 보험업법 제162조에 따른 관계자에 대한 조사업무
3. 기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를 위한 업무

③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보험사기행위 조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보험사기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영
3. 보험사기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제5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험회사(보험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8조(보험살인)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보험중상해·보험상해치사) ①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보험사기) 제8조 내지 제9조 이외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미수범) 제8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보험사기범죄의 가중처벌) ① 제1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금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금 반환) 제8조 내지 제11조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해당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동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연구보고서 2014-14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방안

2015년 3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